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영세자영업자)

작성방법(번호 순서대로 작성하여 주세요)

1 신청인 인적사항 기재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실거주지, 도로명주소 작성) ④ 핸드폰번호
⑤ 사업장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사업장주소 ⑧ 사업장전화번호 ⑨ 계좌번호 기재

<작성요령>

1.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과 동일하게 작성하세요
2.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란에 사업장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작성해 주세요

<주의사항>

1. 개인/법인여부는 무관하나, 상시근로자수가 10인이상(제조, 광업, 건설업) 또는 5인이상(기타 업종)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단, 2개이상의 사업장 운영시 사업장 1개 기준이며,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신청가능)
2.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지원대상 미해당)
3.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 기재시 '타인명의 계좌 이용신청서(서식13)'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2, F5, F6), 외국인자녀(F2, F5, 만15세이상 24세 이하) 신청가능

2 신청내용(지원대상요건) 기재

- ⑩ 지원대상요건 중 사업영위기간 '19.12월~'20.1월내 각각 월 매출금액 기재

<작성요령>

해당기간 내 매출이 있으면 됩니다(소액도 관계 없음). 다만, '20년 1월 폐업한 경우는 대상 제외

<증빙자료 제출>

해당기간 매출을 기재한 경우에는 매출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액, 현금매출액 등) 중 택1 제출(단, 해당기간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가 원칙)

3 신청내용(소득요건 중 연소득, 연매출, 건강보험료 택1) 기재

- ⑪ ☐ 연소득('19년 총소득), ☐ 연매출('19년 총매출) 또는 ☐ 건강보험료 중 택1 하여 "√" 기재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1. 소득요건 중 나에게 가장 유리한(입증서류 제출가능 포함)것을 선택하여 '√' 표시하시면 됩니다
1.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며, 연소득(매출)은 '19년 모두 기준임
2.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소득감소여부 확인시에도 동일함)

<연매출 기재시 증빙자료 중 택1 제출>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합소득세 대상자)
2.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매출) * 행정정보 사전동의시 제출 불필요
3.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매출)
4.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5. 그 외 입증 가능 서류(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연소득 기재시 증빙자료 중 택1 제출〉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합소득세 대상자)
2.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경우)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3.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모든 소득,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통장내역 보완)
4. 사업주가 발급한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모든 소득,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통장내역 보완)
5.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 모두 제출)

잠시만 연소득 7천만원, 연매출 2억원 초과될 경우 또는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을 통해 소득요건 판정을 희망하는 경우

〈'19년 연소득 7,000만원이상, 연매출 2억원 초과 또는 건강보험료 합산 소득요건 판정희망시 작성요령〉

1.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을 통한 소득요건 판정(중위소득 150%이하) 확인 필요
2.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추가작성 하여 제출(가구원 서명 필요)

4 신청내용(소득감소요건, 유사사업참여여부) 기재

⑫ 소득감소기간(소득 또는 매출 택1 기재) '20.3월, '20.4월 각각 해당월 금액기재

〈작성요령〉

3~4월의 소득/매출이 기본 원칙이지만, 3~4월 실질적 근로소득에 가까운 노무제공에 따른 소득이라면 4~5월 소득도 가능(매출 제외)

⑫ 소득감소요건 중 비교대상기간(택1) 소득/매출 기재('20.3~4월 평균소득/매출이 비교대상기간 대비 25% 50% 감소)

현재 소득		과거 소득(비교 대상 기간)	
'20.3~4월 평균 소득·매출	vs (비교)	1)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1)~5) 가운데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2) '19.12월 소득·매출	
		3) '20.1월 소득·매출	
		4) '19.3월 소득·매출	
		5) '19.4월 소득·매출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 중 택1 제출〉

1.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모두(카드사, 국세청)
2.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3.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소득감소 증빙자료 중 택1 제출〉

1.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2. 거래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및 '소득감소확인서(서식11)' 제출하고, 해당시기 '노무제공확인서(서식8)' 또는 계약서 추가 제출
3.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9)' 제출(단,'20년도 계약서로 대체 가능)
단,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과 해당 통장의 '20.3~4월 입금내역 전체 제출
4.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국세청)
5.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무관리가 되는 경우, 어플 캡처(반드시 본인성명 확인가능하여야 함) 인정

⑬ 유사사업참여여부 중 참여사업 및 수령금액을 기재

〈주의사항〉

1. 중앙정부에서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성격의 사업과는 중복 수급 제한(차액지급 가능)
2. 화성시에서 운영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은 유사사업으로 중복 수급에 해당합니다(화성시 지원금액이 150만원미만일 경우 신청가능, 단 차액만 지급)

⑭ 고용서비스(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희망여부 확인후 '√' 체크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영세자영업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방법	비고	제출 (○,×)
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서식 2		
②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서식 4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6		
⑤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서식 7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용)	서식 5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초과시 등 제출	

<영세자영업자 제출서류(총 3가지 각각 택1)>

제출서류	방법	비고	제출 (○,×)
1. 지원대상 요건(택1)			
① '19.12~'20.1월중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액, 현금 매출액 등 (권장)	복사본	카드사 등	
② '19.12~'20.1월중 통장 입금내역 등	복사본		
2-1. 소득요건 중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기본 권장)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사전동의서 제출 불필요	국세청	민원증명>발급신청> 소득금액증명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인 경우	국세청	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및 기타 확인가능 서류	복사본	모든 소득 통장사본	
2-2. 소득요건 중 연매출 입증서류(택1)			
①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기본권장)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인 경우	국세청	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행정정보 사전동의서 제출 불필요	국세청	My홈택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③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My홈택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과세표준증명	
④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원본 제출	세무대리인	
⑤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사본		
3. 매출감소 증빙(택1) *'20.3~4월 평균과 및 비교대상 시점 매출액 비교 가능하여야 함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두가지 모두 제출)	카드사 국세청	현금영수증매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조회>매출조회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복사본	POS시스템	
③ 매출액 입금액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복사본		

※ 비교대상을 소득으로 증빙하는 경우, 특고·프로랜서 소득감소 제출자료 참조